

한미약품 사건, 다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전망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6. 12. 13. 한미약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합동수사단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내부자 및 1차정보수령자 17명을 기소하고,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25명 적발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5. 7. 1.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된 이후 사실상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바, 다음과 같이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내용 및 예상되는 향후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

-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관련)
 - ①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2차 이상 정보수령자
 - ② 해킹·정보도용 등 미공개정보 부정사용자
 - ③ 내부정보가 아닌 미공개 외부 시장정보 이용자
-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시세조종행위 관련)
 - : 거래성황오인·투자매매유인 등 목적성이 없거나 그 입증이 어려운 시세조종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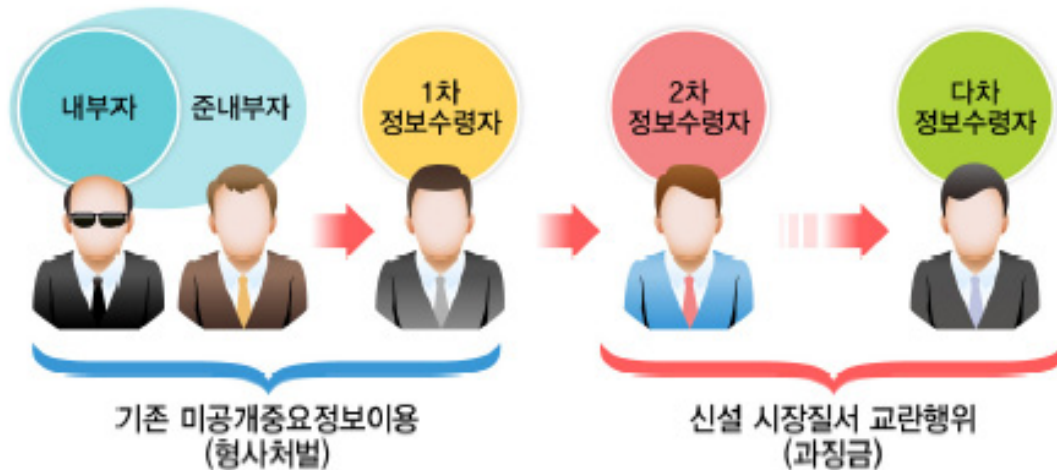
1.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1)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기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회사관계 중심” 모델을 “정보이용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것으로, 상장법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생성한 자라면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자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1차 정보수령자 뿐만 아니라 다차정보수령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의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1차정보수령자가 재차 본인의 지인들에게 위 정보를 전달한 경우, 내부자 및 1차정보수령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2차정보수령자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및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개요도〉



황현일 등 10인 공저, 「안전한 자본시장이용법」, 제43면.

2)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매매 유인 목적이 없는 때에도, 시장에 과다한 허수호가를 제출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 혹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서로 통정하여 매매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산정 방법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보수령차수, 정보지득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향후 예상절차

금융위원회는 남부지검에서 송부한 사실을 기반으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추가 조사(조치대상자에 대한 문답조사 및 증거자료 검토 등)를 진행하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며 추가적인 조사와 의결까지 수 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조치에 있어 조치대상자의 위반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재사례 축적을 통해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보다 구체화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김대식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614 | E-Mail. dshkim@shinkim.com |
| ● 황현일 변호사 | TEL. 02 316 4453 | E-Mail. hihwang@shinkim.com |